

경운대학교 학부제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“경운대학교”라 한다)의 학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입생모집) 신입생은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따라 모집한다.

제3조(교육과정의 구성) ① 우리대학교의 구성은 교육과정 이수지침에 따른다.

② <삭제>

③ <삭제>

④ <삭제>

제4조(교육과정의 이수) ① 교육과정의 이수는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지침에 따른다.

② <삭제>

③ 편입학생은 편입학생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

제5조(제1전공 배정지원) ① 제1전공 배정대상자는 복수의 전공으로 구성된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2개 학기를 이수한 자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4개 학기를 이수한 자로 할 수 있다.

② 제1전공을 배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의 적성과 성적을 고려하여 1학년 2학기 수업 일수 2/3선 전까지 제1전공 배정지원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재입학생과 휴학할 당시 제1전공 배정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복학생은 재입학 원서 또는 복학원서 제출 시 제1전공 배정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전공배정대상자가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부장은 당해 학생의 전공을 지망배율이 낮은 전공으로 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전공별 배정인원) 전공별 배정인원은 학부의 재적 인원을 고려해 학부에서 결정한다. 다만, 학생의 지망상황, 전공별 배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총장의 승인을 취득한 경우, 전공별 배정인원을 증감 및 전공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7조(제1전공 배정기준) ① 제1전공의 배정은 학생의 지망에 의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전공별로 지망인원이 배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사정한다.

1. 기 이수과목의 성적에 의한 배정
2. 성적이 동점일 경우 각 전공에서 정하는 기준

③ 제2항 제1호에 의한 성적은 당해 학생이 취득한 평점합계를 수강신청 기준학점으로 나누어 산출한 평점평균으로 한다.

제8조(전공배정계획) 학부장은 1학년 2학기 수업일수 1/2선 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전공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전공배정대상자
2. 전공배정일자
3. 전공배정신청기간 및 절차
4. 제출서류
5. 전공별 배정인원의 범위
6. 전공배정신청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리방법
7. 기타 전공배정에 관하여 학부별로 정한 사항

제9조(전공배정위원회) 제1전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장과 전공교수로 구성된 전공배정위원회를 두며, 학부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.

제10조(배정절차) ① 학부장은 학생이 제출한 전공배정신청을 전공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정한 후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.

② 교무처장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제1전공자의 학적을 확정된 후,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전공이 확정된 학생은 전공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조직) ① 학부장은 각 전공별 담당교원을 지정 할 수 있다.

② 학부에서는 각 전공별 담당교원과 협의하여 전공간 교육과정, 수업운영, 시설사용 등을 조정한다.

제12조(지도교수) ① 학부 소속학생의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.

② <삭제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